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20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조계원・박수현・양문석

민병덕 • 이광희 • 박지원

주철현 · 김윤덕 · 김문수

양부남 · 김현정 · 임오경

김우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등 30여건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12건이 전소되어 산불에 대한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경북지역 대형 산불 당시 국가유산청은 봉정사, 병산서원, 도산서원 등 국가유산의 산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긴급 벌채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유산 및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안전 공간 조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불로 인한 국가 자산의 피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 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문화재 등의 국 가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주택 및 기타 산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범위, 조성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8항 중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 2.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3.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2(산불방지 안전공간 조
	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주택 및 기타 산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
	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범위,
	조성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
	<u> 령령으로 정한다.</u>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
고 등) ① ~ ⑦ (생 략)	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	8
에도 불구하고 <u>풀베기, 가지치</u>	<u>다음 각 호의</u>
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u><신 설></u>	1.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
	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u>하는 경우</u>
<u><신 설></u>	2.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
	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
	업을 하는 경우

<u><신 설></u>	3.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
	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
	<u>는 경우</u>
<u><신 설></u>	4. 그 밖에 국민생활 편의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u> </u>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